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1. 5. 23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중 소위원회 구성 시 위원 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시 서울시와 달리 자치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시민단체”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규정함에 있어 하한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였으나 상한에 대한 정함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5명 이상”을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안 제12조제1항)

다. 향후 사업추진협의체 설치, 재정적 지원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도시디자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신설 제1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시민단체”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5명 이상”을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p> <p>제5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u>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u>5명 이상</u>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p> <p>제5조(사업추진협의체) ① _____ _____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전문가·공무원</u> _____ _____.</p> <p>② ~ ③ (원안과 같음)</p> <p>제12조(소위원회) ① _____ _____ _____ <u>5명 이상 15명 이하</u> _____ _____.</p> <p>②~ ④ (원안과 같음)</p> <p><u>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